

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

의안 번호	4336
----------	------

2025. 9. 8.
총무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8. 29. 박철수 의원

나. 회부 일자: 2025. 8. 29. 회부

다. 상정 일자: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(2025. 9. 8.) 상정,
“수정의결”

2. 제안 요지

가. 제안 이유

○ 우리 시의 정책·계획·사업·예산·행정서비스 등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확인·검토하여 시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 (안 제3조~제4조)
- 사업 및 부정확 정보의 확인·검토 (안 제5조~제6조)
- 정보의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 (안 제7조~제8조)
- 개인정보 보호 및 시행규칙 (안 제9조~제10조)

3. 검토 의견

-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등에 근거하여, 광양시 행정이 추진하는 정책·사업·예산 등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,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사회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본칙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본칙에는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,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(안 제3조~제4조), 사업 및 부정확 정보의 확인·검토(안 제5조~제6조), 정보의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~제8조), 개인정보 보호 및 시행규칙(안 제9조~제10조)을,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음.

-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 신장 및 행정 신뢰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, 내용이나 조문 체계, 형식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.

5. 심사 결과: **수정의결**(출석위원 6명)

※ 수정 이유 및 내용은 수정안 참고

6. 소수의견의 요지: 해당 없음.

- 붙임 1.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
수정안
2.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

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4336-1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9. 8.

제안자 : 총무위원장

1. 수정 이유

- 부정확 정보의 확인·검토에 있어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일부 삭제함.

2. 수정 내용

-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

“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”를 “위하여”로 하고,

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

같은 조 제2항 중

“제1항제4호의 모니터링단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”를

“부정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·검토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”로 수정함.

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**”를 “**위하여**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제1항제4호의 모니터링단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**”를 “**부정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·검토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**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부정확 정보의 확인·검토)</p> <p>① 시장은 시정 등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<u>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</u> 부정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·검토할 수 있으며, 이 과정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시민 등의 공식 제보·문의 또는 민원을 통한 정보 접수 및 검토</u></p> <p>2. <u>언론·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매체의 보도 내용 확인</u></p> <p>3. <u>외부 공식 채널(홈페이지, SNS 등)에 게시된 정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 및 검토</u></p> <p>4. <u>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시정 등 정보 확인</u></p> <p>5. <u>그 밖에 공개된 자료 및 간행물에 대한 사실 확인</u>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제4호의 모니터링단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부정확 정보의 확인·검토)</p> <p>① ----- ----- <u>위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② ----- <u>부정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·검토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</u> ----- --.</p>

(제정안+수정안)

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양시의 정책·계획·사업·예산·행정서비스 등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보”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(이하 “기본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.
2. “정보통신망”이란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
3. “시정 등”이란 광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정책·계획·사업·예산·행정서비스 등 시가 추진하는 모든 일을 말한다.
4. “부정확 정보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한다.
 - 가. 시정 등의 추진 현황, 규모, 사업 기간 등 객관적 사실을 명백히 다르게 기술한 정보
 - 나. 시정 등과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·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잘못 안내한 정보
 - 다. 시정 등과 관련하여 시가 공식 발표한 내용과 명백히 다른 정보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시정 등의 부정확 정보에 대해서 적용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) 시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시정 등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 시스템 구축·운영
2.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체계 개선
3.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 제공
4. 그 밖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

제6조(부정확 정보의 확인·검토) ① 시장은 시정 등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~~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~~ 부정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·검토할 수 있으며, 이 과정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- ~~1. 시민 등의 공식 제보·문의 또는 민원을 통한 정보 접수 및 검토~~
- ~~2. 언론·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매체의 보도 내용 확인~~
- ~~3. 외부 공식 채널(홈페이지, SNS 등)에 게시된 정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 및 검토~~
- ~~4.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시정 등 정보 확인~~
- ~~5. 그 밖에 공개된 자료 및 간행물에 대한 사실 확인~~

② 시장은 ~~제1항제4호의 모니터링단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~~ 부정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·검토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정보의 제공) 시장은 시민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공식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시정 등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언론계, 학계,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개인정보 보호)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지켜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